

영등포구의회
제202회 임시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
규칙안』

檢 討 報 告 書

【유 승 용 의원 대표발의】



2017. 9. 1.

行 政 委 員 會
專 門 委 員 崔 光 默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』

檢 討 報 告 書

1. 경 과

의안 제260호로 2017년 8월 24일 유승용 의원 외 6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8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」을 행정환경 변화에 맞게 보완하고자 「지방자치법」에서 위임된 사항 및 ‘행정안전부 지방의회 회의 규칙 권고안’에 따라 개정하고, 새로 제정되는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(안)」로 이관되는 의회 운영과 관련된 내용을 삭제 및 법제처의 ‘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’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의안의 제출기한을 회기시작 7일 전까지로 정하여 안정적인 의회운영 도모(안 제10조)
- 나. 토론 과정에서 정보가 누설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, 비공개회의 발의에 관하여는 토론 없이 표결(안 제39조)
- 다. 기금운용계획안(변경안) 및 기금의 결산을 예산에 준하여 처리(안 제68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 제15조의2, 제65조, 제66조의2, 제71조, 제82조, 제85조, 제89조

5. 검토의견

○ 이 전부개정규칙안은, 행정환경 변화에 맞게 보완하려는 것으로서, 새로이 제정되는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(안)」로 이관되는 의회운영과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고, 「지방자치법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‘행정안전부 지방의회 회의 규칙 권고안’을 반영하여 보다 체계적이고, 세부적 내용으로 명시하였으며,

본 규칙안의 구성 체계는, 제1장 총칙, 제2장 회의, 제3장 위원회, 제4장 예산과 결산 심사, 제5장 의원의 자격심사, 제6장 윤리심사와 징계, 제7장 보칙 및 부칙 등 총 78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.

○ 주요내용은,

- 안 제10조에는 의안의 제출기한을 회기시작 7일 전까지로 규정하여 안전검토 등 최소한의 기간을 확보함으로써, 안정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고자 하였으며,
- 안 제39조에는 토론 과정에서 정보가 누설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비공개회의 발의에 관하여는 토론 없이 표결하

도록 규정하였으며,

- 안 제68조에는 기금운용계획안(변경안) 및 기금의 결산을 예산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함.
 - 또한, 기존 제2조 ~ 제10조, 제13조, 제65조 ~ 제69조, 제73조 ~ 제78조는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(안)」으로 이관하였음.
- 검토결과, 본 전부개정규칙안은 행정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보완하려는 것으로 적합하게 전부 개정된 것으로 사료되며,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상위법 저촉이나 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.

참 고 자 료

1 지방자치법

제15조의2(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절차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5조에 따라 청구된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제15조제9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을 지방의회에 부의할 때 그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.

② 지방의회는 심사 안건으로 부쳐진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청구인의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취지(청구인의 대표자와의 질의·답변을 포함한다)를 들을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의회 회의규칙으로 정한다.

제65조(회의의 공개 등) ② 의장은 공개된 회의의 방청허가를 받은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.

제66조의2(조례안예고) ① 지방의회는 심사대상인 조례안에 대하여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지, 주요 내용, 전문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할 수 있다.

② 조례안예고의 방법, 절차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.

제71조(회의규칙) 지방의회는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.

제82조(회의의 질서유지) ① 지방의회의 의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이 법이나 회의규칙에 위배되는 발언이나 행위를 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면 의장이나 위원장은 경고 또는 제지하거나 그 발언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.

- ② 제1항의 명에 따르지 아니한 의원이 있으면 의장이나 위원장은 그 의원에 대하여 당일의 회의에서 발언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.
- ③ 의장이나 위원장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 곤란하면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.

제85조(방청인에 대한 단속) ① 방청인은 의안에 대하여 찬성·반대를 표명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- ② 의장은 회의장의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, 필요하면 경찰관서에 인도할 수 있다.
- ③ 방청석이 소란하면 의장은 모든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다.
- ④ 방청인에 대한 단속에 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.

제89조(징계에 관한 회의규칙) 징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.